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119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A단체

피고B

변론 종결2019. 6. 20.

판결 선고2019. 7. 18.

주 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4,026㎡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D 답 4,026㎡ 중 1/3 지분에

관하여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대출금이 연체되어 이를 대위변제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271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16. 'C는 원고에게 49,414,603원 및 그 중 7,997,586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30,130원 및 그 중 45,065,568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10. 1. 확정되었다.

라. C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외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1)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고, C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발생한 때인 1995. 9. 15.경으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9. 15.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가 2012. 4. 5.경 및 2014. 4. 5.경 피고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채무 승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시점으로, C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2회에 걸쳐 8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C의 증언은 시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C가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형편이 되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지선